

—

—

2014.4.10



가
Korea Law Service Center

- 1.
- 2.
3. 가
- 4.
5. SW 가 가 ()
6. SW 가 가 ()
7. 가
- 8.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24. IT .
25. .

[2014.2.14] [2014 - 16 , 2014.2.14,]

- 1 () 「 」 20 3 5 , 「
 」 23 2 가, ,
 (" 가 ")
 • , •
 , •
 .
- 2 () 가 「 」 2
 .
- 3 ()
 1. " " (" ") ,
 (" " ")
 .
2. " " .
- 4 () 「 」 20 3
 • (" " ")"
 ,
 1 「 」 20 2
 , •
 .
 「 」 24 2 2 3
 8
 ,
 .
 •
 •
 가 「 」
 20 5 가 ,

1 .

4 2 () 「

」 23 2 2

.

1 . . . 가
가 (" ")7 .
2

.

,

" "

5 () 4

「 」 21

.

6 ()

.

가
, 「

」 20 2 .

7 ()

.

.

.

8 () 4 1
, 5 12 .

.

4 1 5 1

,

,

,

, 「 」 20 3 .

9 () 가

.

10 () , , , 「 」 57

1 ,

가 1

11 ()

12 ()

13 () 「 」 26

14 () 「 」 (248)

2016 3 23

< 2006 - 39 ,2006.10.13>

< 2009 - 193 ,2009.8.21>
2009 8 24

< 2010 - 55 ,2010.2.26>

< 2012 - 67 ,2012.3.26 >
2012 4 1 .

< 2012 - 288 ,2012.11.30 >
2013 1 1 .

< 2013 - 144 ,2013.9.6 >
.

< 2014 - 16 ,2014.2.14 >
2014 2 14 .

[별표1]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1. 소프트웨어사업 발주단계별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발주 단계	수행활동	
1. 사업 추진 준비단계	1.1 사업수행 내부조직 구성	
	1.2 사업 추진체계 수립	
2.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단계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2.2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3.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단계	3.1 내·외부 환경 분석	
	3.2 내·외부 현황 분석	내부 업무현황 분석
		내부 기술현황 분석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3.3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3.4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검토 및 보완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4.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계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3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및 검토	
5.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5.2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5.3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검토	
	5.4 입찰공고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6.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6.1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6.5 인수 및 사업종료	

○ 세부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분석·적용 가이드'를 참고

2.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류기준

분류기준	세부 내용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기능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성능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데이터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모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보안 요구사항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품질 요구사항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계약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계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모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단, 요구사항 분류기준은 개별 사업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작성기준

작성항목	설명		비고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성능 / 인터페이스 / 데이터 / 테스트 / 보안 요구사항 등 요구사항 분류항목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술		필수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사업수행, 사업완료 및 검수 시까지 변경, 삭제, 수정 여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요구사항별 고유번호를 생성 - 요구사항 분류(또는 약어)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현가능		필수작성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의 명칭을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작성함 - 단, 기능 요구사항은 상위기능과 하위기능을 조합하여 계층화 될 수 있도록 기술		필수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거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기 작성함		
	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	필수작성
	세부내용	-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모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작성하며, 이해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여 표현도 가능 - 단,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기능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전체시스템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기능구조를 도출하여, 세부기능별로 작성하여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	필수작성
산출정보	- 해당 요구사항의 수행을 통해 사업완료 후 어떠한 산출물이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작성함 - 단, 요구사항에 따라 타 요구사항의 산출정보와 통합되어 별도의 산출물 없을 수 있으며, 비기능적 요구사항의 경우 문서, 보고서, 화면의 형태로 산출될 수도 있음		해당 시
관련 요구사항	- 동 요구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여타 요구사항의 고유번호를 기입 - 단,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관리가 요구됨		해당 시
요구사항 출처	해당 요구사항이 도출된 출처(사업계획서, 담당자/부서, 내부규정 등)를 기입하여 향후 요구사항 변경이나 수정, 삭제 필요 시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고, 사업수행 시 상세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정보 필요 시 활용하도록 함		필수작성

- 단, 요구사항 출처는 요구사항 변경·관리 용도로 사용하며, 제안요청서에는 명시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분석·적용 가이드'를 참고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구분	방법 및 절차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단,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SW기반 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방법 및 절차	○ 발주자는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 및 준비한다.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③ 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 ④ 투입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⑤ 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투입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다.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table><tr><th>항목</th><th colspan="2">계산식</th><th>결과</th></tr><tr><td>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td><td colspan="2">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td><td>FP</td></tr><tr><td rowspan="5">② 1인 생산성</td><td>사업규모(FP)</td><td>1인 생산성(FP/MM)</td><td rowspan="5"></td></tr><tr><td>1,000 이하</td><td>19</td></tr><tr><td>1,000 ~ 1,999</td><td>22</td></tr><tr><td>2,000 ~ 2,999</td><td>24</td></tr><tr><td>3,000 이상</td><td>22</td></tr><tr><td>③ 1인 총 투입기간</td><td colspan="2">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td><td>개월</td></tr><tr><td>④ 투입 인력 수</td><td colspan="2">-</td><td>명</td></tr><tr><td>⑤ 전체 개발기간</td><td colspan="2">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td><td>개월</td></tr></table> ○ 위원회는 발주자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 등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별지 제2호서식)’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③ 조달청(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한다.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 발주자는 전문위원회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근거로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결정한다.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이하	19	1,000 ~ 1,999	22	2,000 ~ 2,999	24	3,000 이상	22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개월	④ 투입 인력 수	-		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		개월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이하	19																														
		1,000 ~ 1,999	22																														
		2,000 ~ 2,999	24																														
		3,000 이상	22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개월																													
	④ 투입 인력 수	-		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		개월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예시 : 기능요구사항 - 00X)
요구사항 명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소프트 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 원 _____(서명) 위원장 _____(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2013.9.6] [2013 - 148 , 2013.9.6,]

「 22 5 24 4 4 , 16
2 1 17 8 1 .
" " " " 「
」 26 .

< 2012 - 275 ,2012.11.22 >

1. 2012 11 24 .
2. 「 . 」 (248)

2015 11 24 .

< 2013 - 148 ,2013.9.6 >

- 1 () .
- 2 () 「 . 」 (248)

2016 3 23 .

가

[2014.4.8] [2014 - 25 , 2014.4.8,]

1. 4

, 4

2. 「 」 10 2 1 ‘ ’

가 5 20

3. 가 2 1 가

가가 .

2. 24 2 2

1. SW

.

< 2007 - 33 ,2007.9.10>

. ,

.

< 2008 - 198 ,2008.12.19>

2009. 4. 1 .

< 2009 - 170 ,2009.8.19>

1.

2009. 4. 1 .

2.

「 . 」 (248)

,

2014 7 31 .

< 2009 - 198 ,2009.9.1>

1.

2009.8.31 .

2.

「 . 」 (248)

,

2014 7 31 .

< 2011 - 299 ,2011.12.30>

1.

2012.1.1 .

2.

「 . 」 (248)

,

2014 12 31 . 2 2014 12 31 .

< 2012 - 87 ,2012.4.26>

1.

. ,

.

2.

「 . 」 (248)

,

2014 12 31 . 2 2014 12 31 .

< 2013 - 152 ,2013.9.6>

1 () .

2 () 「 . 」 (248)

,

2016 3 23

.

< 2013 - 196 ,2013.12.31>

1 () 2014 1 1 .

< 2014 - 25 ,2014.4.8>

1 () .

2 () 「 . 」 (248)

,

2016 3 23

.

[2014.1.1] [2013 - 184 , 2013.12.18,]

「 2 3 가 7
(, 5) 5
1. 「 」 13 (GS)
2. 「 」 50
3. 「 가 」 38 (CC) 「 」
56 가
4. 「 」 16 (NEP)
5. 「 」 15 2 (NET)

1. 가 「 가 」
2 1 가 가가
2. 1 가 5 가
5 5
3. 가 5
4. 가 가 「 」
2 가 「 」
5 2 9 3
5. , 가 ,
6. 가 30 「
」 20 6 13 2
14 2 (www.swit.or.kr)

< 2007 - 42 ,2007.11.19>

.

< 2009 - 120 ,2009.6.22>

1 () .

2 () 「 」

3 .

< 2010 - 54 ,2010.2.26>

1 () .

2 () 「 」

3 .

< 2013 - 41 ,2013.2.22>

1 () .

2 () 「 . 」 (248)

,

2016 2 26 .

< 2013 - 143 ,2013.9.6>

1 () .

2 () 「 . 」 (248)

,

2016 3 23 .

< 2013 - 184 ,2013.12.18>

1 () 2014 1 1 .

2 () 1 .

.

3 () 「 .

」 (248)

,

2016 3 23 .

[별지 서식]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제외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SW 가 가 ()
[2013.3.18] [9999 , 2013.3.18,]

[]

- .
1. SW 가 가
 - 1.1 SW 가 가
 - 1.2 SW 가 가
 - 1.3 SW 가 가 가
 - 1.4 SW 가 가
 - 1.5 SW 가 가
 2. SW 가 가 가
 3. SW 가
 - 3.1 SW 가
 - 3.1.1 (ISP)
 - 3.1.2 (ISP)
 - 3.1.3 (ISP/BPR)
 - 3.1.4 (EA/ITA)
 - 3.1.5 (ISMP)
 - 3.1.6
 - 3.2 SW 가
 - 3.2.1

3.2.2

3.3 SW 가

3.3.1

3.3.2

3.3.3 /

3.3.4 SLA

3.3.5

4. SW 가

4.1

4.2 가

4.3

. SW

1.

2. (ISP)

2.1

2.1.1

2.1.2

2.1.3

2.1.4

2.1.5

2.1.6

2.2

2.2.1

2.2.2

2.2.3

2.2.4

2.2.5

2.2.6

3. (ISP/BPR)

3.1

3.1.1

3.1.2

3.1.3

3.1.4

3.1.5

3.1.6

4. (EA/ITA)

4.1

4.1.1

4.1.2

4.1.3

4.1.4

4.1.5

4.1.6

5. (ISMP)

5.1

5.1.1

5.1.2

5.1.3

5.1.4

5.1.5

5.1.6

6.

6.1

6.1.1

6.1.2

6.1.3

6.1.4

6.1.5

6.1.6

. SW

1.

2.

2.1

2.1.1

2.1.2

2.1.3

2.1.4

2.1.5

2.1.6

2.2

2.2.1

2.2.2

2.2.3

2.2.4

2.2.5

2.2.6

. SW

1.

2.

2.1

2.1.1

2.1.2

2.1.3

2.1.4

2.1.5

2.1.6

2.2

2.2.1

2.2.2

2.2.3

2.2.4

2.2.5

2.2.6

2.3 /

2.3.1 /

2.3.2

2.3.3

2.3.4

2.3.5

2.3.6

2.4 SLA

2.4.1 SLA

2.4.2

2.4.3

2.4.4

2.4.5

2.4.6

3.

3.1

3.1.1

3.1.2

3.1.3

3.1.4

3.1.5

3.1.6

- .
 - 1.
 - 1.1
 - 1.2
 - 1.3 가
 - 2.
 - 2.1
 - 2.2 가
 - 2.3 가
 - 2.4
 - 2.5
 - 3.
 - 3.1
 - 3.2 가
 - 3.3 가
 - 3.4
 - 3.5
 - 4.
 - 4.1
 - 4.2 가
 - 4.3 가
 - 4.4
 - 4.5
 - 5. ERP
 - 5.1
 - 5.2 가
 - 5.3 가
 - 5.4
 - 5.5
 - 6. Data Warehouse / Data Mart
 - 6.1
 - 6.2 가
 - 6.3 가
 - 6.4
 - 6.5
 - 7. Rule
 - 7.1
 - 7.2 가
 - 7.3 가
 - 7.4

7.5

8.

8.1

8.2 가

8.3 가

8.4

8.5

9.

9.1

9.2 가

SW 가 가 ()

[2013.4.1] [9999 , 2013.4.1,]

SW SW 가 (4)
SW 가 가 가 ,

.

, SW SW 가 가 ,
/ SW 가 가 가

.

- /
: (2012 - 25 , 2012 6 27)
2012 3 6 2012 - 12

- 2014
: 2014 (2013 4)

가

[2013.9.6] [2013 - 145 , 2013.9.6,]

- 1 () 「 」 20 4
(
) • (IT , ,
•) 가 .
- 2 () 가, , 가 가
(" 가 ") 「 」 2
가 .
1. 「 가
「
) 18
2. 가 42 42
3. 가 43 43 2, 43 44
가
4. 가 44 45
- 3 (가) 2 가
가 1 .
2 가 가
2 .
- 4 (가) 가
1 2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
가 16 3 16 3
가
가 .

「 가 」

「 (BMT) 가 , 가 .

5 (가) 가 가 . . 가 가 가 (" ") . . 가 1 10 . 가 가 가 , (1) . 가 1 3 가 , 가 . 가 2 가 가 가 3 가 가 , 가 가 , 가 가 . 6 () 가 가 「 가 4 」 . 7 () 가 (TTAS) - (TTAS.IS - 9126.1) 가 - 가 (TTAS.IS - 14598.5) . 「 」 26 . 8 () 「 . 」 (248) , 2016 3 23 .

< 2007 - 51 ,2007.12.31 >

. ,
.

< 2010 - 53 ,2010.2.26 >

. ,
.

< 2011 - 148 ,2011.7.22 >

. ,
.

< 2013 - 145 ,2013.9.6 >

. ,
.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절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여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업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text{평가부문별 점수} = \sum_{k=1}^n \text{평가항목 배점}_k \times \left(\frac{\text{평가항목의 취득등급 값}_k}{\text{평가항목의 등급최고값}_k} \right)$$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능성	기능구현 완전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상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성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식성	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위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효율성	반응시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자원사용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조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처리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유지 보수성	문제진단/해결 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백업/복구 용이성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뢰성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한다.
	장애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데이터 회복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공급업체 지원	유지보수 지원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보수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제품 신뢰도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직접생산여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저작권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생산을 증명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총 배점 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text{평가부문별 점수} = \sum_{k=1}^n \text{평가항목 배점}_k \times \left(\frac{\text{평가항목의 취득등급 값}_k}{\text{평가항목의 등급최고값}_k} \right)$$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별지 제1호 서식](제5조제3항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
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
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
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제5조제5항 관련)

평가의견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평 가 의 견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기준			
평가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의견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기준			
평가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의견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제5조제6항 관련)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2013.9.6] [2013 - 147 , 2013.9.6,]

1 () 「 」 21

,

2 () 가, , (

" 가 ")

20 (, , ,) .

3 () 가 「

」 8 1

가 가

100 80 , 2 (" ")

가 가 , .

1 가 가

「 」 8 2 .

4 () 가 3

13/1000

.

5 () 가 4

1

1. 가 2 : 13/1000

가 가 13 8, 13 5

2. 가 1 : 13/1000

13 5

6 () 가 2

가 5

.

7 () 가 가

1 가 30

8 () 3 가

9 () 가 2
5 8

10 () 「 . 」 (248)
2016 3 23 .

< 2006 - 43 ,2006.11.1 >

4 2008 1 1 , 2007 12 31

< 2009 - 193 ,2009.8.21 >
2009 8 24 .

< 2012 - 67 ,2012.3.26 >
2012 4 1 .

< 2013 - 147 ,2013.9.6 >

()

[2012.12.1] [9999 , 2012.12.1,]

1 ()

‘
/ ’

.

2 ()

.

1. " "

/

,

‘

(Customizing)

("

") ’

. ,

()

.

2. " " 가 (" ")

,

,

.

가

.

3. " " 가 , , , 가 ,

()

.

4. " "

가

.

5. " "

.

6. " "

.

7. " ()"

(Customizing)

.

8. " (Customizing)" /

가

.

.

9. " " (" 2 3)
 (" 2 1)
) .

10. " " 가 가 가

11. " "

12. " " ,

13. "가" "•" , , , , ,

3 ()
.
「
」, 「
」 ()

가

$$4 \quad (\quad)$$

$$\cdot \quad (\quad)^2 \quad , \quad \cdot \quad ,$$

$$, \quad , \quad , \quad , \quad , \quad ,$$

$$3 \quad 3$$
[illegible]

5 ()

가 ,

10

15

30

6 () 5

5

10

1.

가

2.

50%

3.

50%

10

가

30

24

7 ()

가

, 가

3

가,

가

가

3

가

10

30

24

8 (가)

, , , ,

가

,

(/),

,

(/ /)

. ,

()

가

가

가

가

,

가

가

,

7

9 (가 가)

가

,

가

,

10

가

가

가

,

가

. ,

.

,

15

,

,

10

. ,

가

30

10 ()

,

,

가

가

，

3

1.

2.

3.

4.

5.

11 (가)

， 가

60

. 가 가 60

가

가

，

. ， 가

60

가

60

가

60

가

(

，

，

)

(

)

. ， 가

60

가

60

가

60

12 ()

，

가

가

，

가

， 가 가

10

3 .

13 (가 가) 가
()

15 가
 , 가

가 ,
가 15
 , 11
11 가

14 (가) 13

1. 가 가 . 가 .
 . 가
2. 가 ,
3. 가 2

15 ()

- ,
 .
1. ,
2.
3.
가 ,
가 ,
가 , 가

16 () 가 15

15

1. 4 :

2. 4 가 가 2

: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 \times 4}{\text{공사기간(개월수)}}$$

3. 4 가 가 2

: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text{공사기간(개월수)}}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수)} \times 2$$

,

1. 1

2. 가 「 」 2 5 가
(가)가 가
가

17 ()

가 가

18 () 가 ,

19 ()

가

가

가

가 ,

.

20 () 가 . (

(3

)가 ,), .

.

.

(7

)

,

.

가

10

,

.

. , 가

가

가

3

.

,

.

3

.

가

10

2

.

.

.

10

가

. ,

.

21 ()

가

.

가

(" ")

.

.

1.

2.

3. 가

4. 가 가

22 () 21

)가 (

1

,

.

가

1

,

1

1

.

23 (3)

,

3

.

3

, 20

3

.

24 ()

가

.

3

.

가

.

가

가

,

,

.

3

.

25 ()

가

가

20

23

,

가

‘

가

,

(

"

")

,

. ,

가

.

가

가

.

· ,
· 10% ,
· 5%
· 가
· 가

26 () 20 23 ,

·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27 (·) 가 가
· ,

가 가
· ,

28 () ,

· ,
· ,
· ,
·

10 ,

· ,
·

29 ()

1 . 1

·
·
· ,
·

가

· , 가

가

5%

· 가 · ,
·

30 () 가

·
2.5/1000 ((" ")
1.5/1000)

가

· ,

·

1. 가

2. 가

3. (

가)

4. (

·

30)

5.

·

1.

· ,

가

가

·

2.

(

)

·

3.

·

31

(

)

가

가

(

,

)

· ,

,

가

·

,

,

, ,

,

· ,

가

가

(

)

·

,

가

,

·

,

3

·

·

3

가

·

,

·

32

(

가)

가

·

1.

,

2.

3.

, (Back - up)

,

가

.

33 ()

‘

, 3 (‘ ’) .

가

,

가

,

가

.

‘ , ’

.

1.

2. (, , , , 가)

3. , 가 가

‘ , , ’

30

가

.

‘ , ’

,

가

.

가

.

34 ()

3

. , 가

. 가 ,

. , 가

.

가

,

.

1.

2.

3.

4. 가 가

5.

6.

,

7.

가

3

1

가

3

가

35 ()

가

1. 가

가

2. 가

가

36 (, ,)

가

, , (" ")

가 , , ,

가

,

.

,

, ,

.

가

.

.

37 ()

.

,

,

,

,

.

가

• , , , , .

가

가

, , .

•

, (" " ,

•

•

1.

2.

3.

•

•

•

•

가

•

•

•

가

•

•

38 ()

3 (" ")

•

•

가

• ,

•

1. (가)

2.

3.

가

•

가

가

•

1.

가

•

2.

3.

가

2

가

•

•

•

가 , 가

가 가
,

39 ()

3
가
.

,

40 ()

· ,
·

41 (,)

1. 가

2. 가

3. 가 , 3 (가 가
) , 가

4.

5. 5 가

가 ,

가

·

1. 가

2. 가 가

3. 가 가

가

.

()

.

()

가

.

42 ()

가

3

.

43 ()

가

.

,

.

가

.

()

[2012.12.1] [9999 , 2012.12.1,]

1 ()

.

2 ()

.

1. " "

.

2. " " 가 (" ")

,

SLA(Service Level Agreement)

.

가 .

3. "SLA" 가 ,

,

4. " " 가

, " "

가

(, ,)

.

5. " "

.

6. " (Major upgrade)"

X,Y,Z

(X)

.

7. " (Minor upgrade)"

(X)

.

8. " (Update)" 가

.

9. " (Patch service)"

.

10. " " , , .
11. " (Bug)" , (,) .
12. " " (「 」 2 3) (「 」 2 1) .
13. " 가 " . , , , , , .
- 3 () . 「 」 () , 「 」 () .
- 가 .
- 4 () □ □ □ () ○ ○ ○ / () , , , 3 3 .
- 가 가 가 10 3 .
- 5 () .

- 1.
- 2.
- 3.
- 4.
- 5.
- 6.

가 가

- 1.
- 2.
- 3.
- 4.

/

가

/

3. (가

)

가

.

.

6 ()

1

. ,

가

.

7 ()

가

(

)

,

,

,

. ,

,

.

8 ()

가

, 가

.

3

.

,

.

가

.

10

30

,

24

.

9 (가) , , (가)
 40) (/), , (/ /)
 ,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5 1 " "
 가 ,
 ,

가
 가 ,

1. 가
- 2.
3. , ,
4. 가
5. 가

가 . (,
 ,
 가)

,
 " " 가 ,
 . , 가 .

10 (가 가) 가 ,
 가

, 10
 . ,

가
 가 가 ,
 . , 가
 .

15

10

가

30

11 ()

가

가

3

1.

2.

3.

4.

5.

12 ()

가

가

가

15

13 (가) 12

1.

가

가 • 가 •

2.

•

가

3.

가

2

14 ()

1. ,

2.

3.

가 ,

가 ,

. , 가

.

15 () 가 14

,

. 14 .

1. 4 :

2. 4 가 가 2

: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 \times 4}{\text{공사기간(개월수)}}$$

3. 4 가 가 2

: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text{공사기간(개월수)}} \times \text{기성부분에대한대가의지급주기(개월수)} \times 2$$

,

.

1. 1

2. 가 「 」 2 5 가

(가)가 가

가

16 ()

가

가

. , 가

.

17 ()

,

가

가

,

· ,

가

가

2

·

가

·

18 ()

가

가

,

2.5/1000 (

1.5/1000)

(" ")

·

·

1. 가

2.

3.

19 ()

,

3

·

·

3

가

·

,

·

20 ()

‘ ’

3

(‘ ’)

·

가

,

가

,

가

·

‘ ’

·

1.

2. (, , , ,)

3. , 가 가

‘ , , ,

30

가

. ‘ , , 가 . , 가

.

21 ()

3

. , 가

. 가 ,

. , 가

.

가

,

.

1.

2.

3.

4. 가 가

5.

6.

,

7.

가

3

1

.

가

,

3

. ,

가

.

22 ()

3 (" ")

,

.

가

.

1. (가)

2.

3.

가

4. 가 15

, 가

가

.

1. 가 ,

2.

3. 가 2

가

,

,

.

가

,

가

가

가

,

.

23 ()

3

.

,

가

.

,

.

.

24 (,)

.

1. 가

2. 가

,

3. 가 , 3 (가 가

),

가

4.

1. 가

2. 가

가

3. 가

가

()

()

가

25 ()

가

3

26 ()

가

가

()

[2012.12.1] [9999 , 2012.12.1,]

1 ()

/

.

2 ()

.

1. " "

/

,

가

.

2. "

"

가

(" ")

,

,

.

가

.

3. "

"

가

.

4. "

"

2

1

, "

"

.

5. "

"

. 가

.

.

.

.

.

6. "

"

(「

」

2

3

)

(「

」

2

1

)

.

7. "

"

가

가

가

.

8. "

"

.

9. "

"

,

,

.

10. " 가 " . , , , , , , .

3 () . 「 」 () , 「 」 () .

가 .

4 () . (2 , . , , , , , 3 3 .

가 , 가 가 , 가 , 10 3 .

5 () 가 , . , 10 . , , , , , .

15 . ,

30 .

6 () 5

.

5

,

,

10

,

.

1. 가

2. 50%

3. 50%

10

가

,

30

24

.

7 () 가

, 가

3

.

.

,

가,

가

가

3

.

,

.

가

.

10

,

30

24

.

8 (가)

, , ,

가

,

(/

),

,

(/ /)

.

가 가 가 가
가 , 가 ,
가 , 7 .
9 (가 가) 가 ,
가 10
가 ,
가 가 ,
가 가 ,
가 ,
15 ,
10 ,
가
30 .
10 () ,
가 ,
가 .
가 ,
3 .
1.
2.
3.
4.
5.
11 (가) ,
가 60 가
가 60 .

가
가

,

. , 가
가
가

60

60

60

가

(

,

,

.

)

(

.

)

.

,

가

60

가

60

가

60

.

12 ()

,

가

.

가

,

가

.

,

가

가

.

10

3

.

13 (가 가)

가

(

) 15

가

.

,

가

.

가

,

가

15

. , 11

11

.

가

.

14 (가) 13

1. 가 가 • 가 •
2. 가 ,
3. 가 2

15 ()

,

.

1. ,
 - 2.
 - 3.
- 가 ,
- 가 ,
- 가 ,

16 () 가 15

,

15

1. 4 :
 2. 4 가 가 2
- :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 \times 4}{\text{공사기간(개월수)}}$$

3. 4 가 가 2
- :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text{공사기간(개월수)}}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수)} \times 2$$

,

.

1. 1

2. 가 「

(가

)가

2

5

가

가

17 ()

.

.

,

가

가

.

18 ()

가

,

.

19 ()

가

,

.

,

.

가

가

.

가

,

.

20 ()

가

.

(

(

3

)가

,

),

.

.

.

(7

)

,

.

가

10

,

.

가 3

가

10
2

10 가

21 (가) 가 (" ")

1.

2.

3. 가

4. 가 가

22 (3) ,
3
3 , 20
3

23 () 가 3

가

가
가

3 .

24 () 가 가 20

22

가

가 ‘
(" ")

가

가

가

10%

5%

25 ()

20

22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6 ()

가

가

가

가

27 ()

10

,

.

,

.

28 ()

1

.

1

.

.

,

.

.

가

. , 가

.

가

5%

,

가

. ,

.

29 () 가

,

2.5/1000 (

1.5/1000)

(" ")

.

가

. ,

.

.

1. 가

2. 가

3. (

가)

4. (

,

30)

5.

1.

. ,

가

가

2.

.

(

)

.

3.

.

30

(

)

(

,

)

,

가

.

,

,

,

,

,

.

가

가

(

)

.

,

가

,

.

3

,

.

.

3

가

.

,

.

31

(

)

‘

,

3

(

‘

’)

.

가

,

가

,

가

.

‘

,

.

1.

2. (, , , ,)

3. , 가 가

‘ , , ,

30

가

‘ , , ,
가 . , 가

.

32 ()

3

. , 가

. 가 ,

. , 가

.

가

,

1.

2.

3.

4. 가 가

5.

6. ,

7. 가

3

1

. 가 ,

3

. ,

가

.

33 ()

,

.

가

,

.

,

,

.

가

.

1. 가

가

2. 가

가

34 (, ,)

•

가

, ,

(" ")

가 , , ,

가

,

.

,

• ,

.

가

.

.

35 ()

.

,

, , ,

.

가

• , , ,

,

• 가

.

, 가

,

.

•

, (" ") ,

.

1. •

2.

3.

가

가

36 ()
" ")

3 (

가

1. (가)

2.

3. 가

가

가

1. 가 ,

2.

3. 가 2

가

가

가

가

가

37 ()

3

가

38 ()

· , ,
·

39 (,)

·

1. 가

2. 가 ,

3. 가 , 3 (가 가
) , 가

4.

5. 5 가

가 ,

가

·

1. 가

2. 가

가

3. 가

가

가

·

()

·

()

가

·

40 ()

가

3

·

41 ()

가

.

,

.

가

()

[2012.12.1] [9999 , 2012.12.1,]

1 ()

2 ()

1. " "

2. " " 가 (" ")

SLA(Service Level Agreement)

3. "SLA"

가

4. " " 가

, " " 가

(, ,)

5. " " . 가 . . .

6. " (Update)" 가

7. " (Patch service)"

8. " " , ,

9. " (Bug)" , (,

) .

10. " " (「 」 2 3) (「 」 2 1)

11. " 가 " . , , , , , .

3 () . 「 」 () , 「 」 () .

가

4 () □ □ □ () ○ ○ ○ / , , ,

3 3

가

가

, 가

가

10

3

5 ()

1. /

2. /

3.

4.

5.

6.

7. / (,)
 / , 가 가
 가
 .
 .
 6 () 1 . , 가
 .
 7 () 가 ()
) , , ,
 , ,
 , .
 8 () 7
 ,
 ()가 .
 .
 , 가
 .
 , ,
 , , ,
 ,
 , 가
 , , ,
 . 가
 , 가
 ,
 ,
 ,
 (" ") ,

- 1.
- 2.
- 3.

•

.

.

•

,

.

9 ()

가

, 가

.

3

.

,

.

가

.

10

30

,

24

.

10 (가)

,

,

(40)

가

,

(/),

,

(/ /)

.

가

가

가

가

가

,

가

,

.

5

1

"

/

"

가

,

.

,

,

.

가

가

,

.

1. 가
- 2.
- 3.

, ,

,

.

"

"

가

,

.

,

가

.

11 (가 가) 가 ,
가

,

10

.

,

.

가

가

가

,

. , 가

.

,

15

,

,

10

.

,

.

가

30

.

12 () ,

,

.

가

.

가

,

3

.

- 1.
- 2.
- 3.
- 4.
- 5.

13 () . , 가

,

,

.

가 , 가
15

.

14 (가) 13

.

1. 가 가 가 가 가

. 가

2. 가 ,

3. 가 2

15 ()

,

.

1. ,

2.

3.

가 ,

.

가 ,

. , 가

.

16 () 가 15

,

. 15 .

1. 4 :

2. 4 가 가 2

: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 \times 4}{\text{공사기간(개월수)}}$$

3. 4 가 가 2

: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text{공사기간(개월수)}}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수)} \times 2$$

,

.

1. 1

2. 가 「

(가

)가

2

5

가

가

17 ()

가

가

.

. ,

가

.

.

18 ()

,

가

.

5

,

,

.

5

,

15

.

,

가

가

,

가

.

가

.

19 () 가

가

,

2.5/1000 (

1.5/1000) (" ")

.

.

1. 가

2.

3.

20 ()

3

3

가

21 ()

3

(‘ ’)

가

가

가

1.

2. (, , , , 가)

3. , 가 가

30

가

가

가

22 ()

3

가

가

가

가

1.

2.

3.

4.

가 가

5.

6.

,

7.

가

3

1

.

가

,

3

.

,

가

.

23

(

)

3

(

"

")

,

.

가

.

1.

(

가

)

2.

3.

가

4.

가

15

,

가

가

.

1.

가

,

2.

3.

가

2

가

,

,

.

가

,

가

.

가

가

,

.

24

(

)

3

.

,

가

.

,

.

.

25 (,)

.

1. 가

2. 가

,

3. 가 , 3 (가 가
) , 가

4.

.

1. 가

2. 가

가

3. 가

가

.

()

.

() 가

.

26 () 가 3

.

27 ()

가

.

,

.

가

.

[2014.1.1] [2013 - 200 , 2013.12.31,]

1 () (" ") 20 3,
(" ") 8 가
· ·

2. ()

1. " " . .

,

가

3 (가) 가 17 2

가

4 () 가

5 () 가

1. () • •
2. () • •

3. 「 가 가 2 가 . . () 가 . .

6 () 8 가 1 .

7 () 가 .

8 () 가 1 .

가 1 가 가 1 가 85 .

가 1 3 가 1 가 .

9 () 8 3 가 (" ") 17 「 」 .

가 가 3 가 3 가 .

10 () 가 「 」 3 2 .

가

.

「

」 24

.

11 ()

가

7

.

.

가

1

14

.

12 ()

,

가

가

.

(5 2)

,

가

.

가

8

1

2

.

13 () 「 . 」 (248)

,

2016 3 23

.

< 2008 - 199 ,2008.12.19>

1 ()

.

4

2 () 1 1

가

.

< 2009 - 193 ,2009.8.21>
2009 8 24 .

< 2011 - 262 ,2011.12.14>
1 () 2012 6 1 .
2 () 1
가 .

< 2013 - 146 ,2013.9.6>
.

< 2013 - 200 ,2013.12.31>
1 () 2014 1 1 .
2 () 1
가 .

[별표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I.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II.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30점	99~80% 28점	79~60% 26점	59~50% 25~16점	50%미만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30점	69~60% 28점	59~50% 26점	49~40% 25~16점	40%미만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III.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table><tr><td>㉠불일치 (㉡, ㉢불일치여부 무관)</td><td>㉠, ㉡, ㉢ 전부 일치</td><td>㉠은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td><td>㉠은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td></tr><tr><td>0점</td><td>30점</td><td>15점</td><td>0점</td></tr></table>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불일치 (㉡, ㉢불일치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은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은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불일치 (㉡, ㉢불일치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은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은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 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하도급율) <table><tr><td>95%이상</td><td>94~90%</td><td>89~85%</td><td>84~80%</td><td>79~70%</td><td>70%미만</td></tr><tr><td>30점</td><td>25점</td><td>20점</td><td>15점</td><td>10점</td><td>5점</td></tr></table> ※1.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IV.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GS인증,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③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최대 1점)
----	-----	--

※ 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원)	하도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 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1) 하도급율(%) = (하도금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금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할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13.9.6] [2013 - 151 , 2013.9.6,]

1

1 () 「 (" ") 24
(" ") 17 , (" ") 12
(" ") ,
.

2 () .

1. " " 2 3

2. " " (" ") 24 2

3. " " 14 5

4. " " 14 2

5. " "

6. " " , ,

2

3 () 17 2 26

4 () (") (" ") ,

1

, , •

,

•

•

5 ()

3

•

1.

2.

가

3.

3

6 ()

•

1.

:

, , ,

,

,

2.

•

:

,

•

3.

:

, ,

, , , ,

, , , ,

, ,

4.

:

,

7 ()

16

(" ") , ,

•

1

24

2

2

「

가

」

•

8 () 7 1

가

30

• ,

•

1

18

(" ") .

9 () 가

7 8

17 (" ")

가 .

1

가

.

10 ()

7 8

.

1

가

,

.

가

,

.

11 () 10 1

.

, 1

가

.

1. 가

2.

4

12 () 7 1

(

) , ,

.

1

가

.

.

2

가

가

.

13 ()

12

19

(" ")

.

가 12 3
가

가

5

14 ()

14

1.

2.

3.

15 ()

6

16 () 12 5

1

7

17 () 「

」 (248)

2016 3 23

< 2008 - 201 ,2008.12.19>

1 ()

2 ()

2008

< 2008 - 209 ,2008.12.24>

1 ()

2 ()

2008

< 2009 - 193 ,2009.8.21 >
2009 8 24 .

< 2012 - 67 ,2012.3.26 >
2012 4 1 .

< 2013 - 33 ,2013.2.8 >
.

< 2013 - 151 ,2013.9.6 >
.

[별표 1] 수수료(제16조 관련)

신 청 내 용	수 수 료
1.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신규)	5만원
2.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변경)	3만원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재 발급	무료
4.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신고	무료
5.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확인서	2만2천5백원 (실적 10건 초과 시 건당 1천원 부과)

[2013.9.6] [2013 - 153 , 2013.9.6,]

1

1 () 「 」 (" ") 2 5 , 24
3, (" ") 1 2, 17 7 (" "
") 13
.

2 ()

1. " " 2 5 1 2
가 .

2. " " 24 3 5 17 7
.

3. " " 24 3 1
가 . .

4. " " 24 3 6 13 4 6
가 .

3 ()

.

2

4 () 26
.

5 ()

() .

1. (10)

2. ()

6 ()

4

9

(" ")

.

.

.

1. .

2.

3.

4. 가

.

.

3

7 () 2 5 " " 가

1 2 1 2 " " 30

.

.

.

.

.

.

.

.

1 2 1 3 "

"

.

1. 1 2 1 1

2.

3.

4.

8 () 13 1 20

(" "

"

)

(

)

.

1

.

1.

2.

3.

, 13 1 21 , 22

.

,

.

,

.

9 ()

"

"

가

.

가

21

.

1. 가 ,

,

()

2.

3.

"

"

가

.

가

22

.

1. ()

2.

1

2

.

4

10 ()

가

13

5

26

(" ")

.

11 ()

8

.

가

24

3

4

.

3

.

12 () 가

27

.

1

.

1. , 가

2. 1

13 () 가

,

.

5

14 () 「 . 」 (248)

,

2016 3 23 .

< 2008 - 200 ,2008.12.19>

1 () .

2 () 2 2009 7 31

13 7 6 1()

.

< 2009 - 193 ,2009.8.21>

2009 8 24 .

< 2012 - 67 ,2012.3.26>

2012 4 1 .

< 2012 - 276 ,2012.11.23 >
2012 11 24 .

< 2013 - 153 ,2013.9.6 >
.

[2013.9.6] [2013 - 141 , 2013.9.6,]

1. SW : (SW)
가. : 267 - 2
. :
. (21)
- SW : SW, SW, SW, SW, SW,
SW, SW
- SW : SW, / , SW
- SW : SW, SW, SW, / SW, ()
) SW, GIS SW
- SW : SW, SW
- SW : OS, SW, SW
. : 2008. 11. 06

2. SW :
가. : 222 - 13
. :
. (7)
- SW : SW, SW
- SW : SW, SW
- SW : OS, SW, SW
. : 2008. 11. 06

3. :
「 . 」 (248)

2016 3 23 .

< 2009 - 194 ,2009.8.26 >

1 () .

< 2013 - 141 ,2013.9.6 >

.

[2013.9.6] [2013 - 142 , 2013.9.6,]

1 () 「 」 (" ") 13 1
(" ") 9 2, 10
(" ") .

2 () .

1. " " . .
. . . 가 . ()
)

2. " " ,

3. " " 가 ,

4. " 가 " ,

5. " " .

6. " " 가 가

7. " " 가

8. " " 가

9. " " 가

10. " " 가

11. " " 가

12. " " .

가

13. " " 가 ,

3 () .

1. 가 가

2.

3. 「 」 2 1 2

4.

4 () 「 」 (" ") 3 3 1 . 가

5 () () 가

, 가 .

() .

1. , , , ,

2.

3. ,

4. , ,

5.

6. 가

7.

8.

() .

1. 가

2. ,

3.

() .

1. 가

2. 가

3.

() .

1. , ,

2. ,

3. 가 가

4. 가

5. 가

() , .

()

.

() , .

.

6 () ()

.

1.

2. 5 3 1 가 가

3. 5 3 2

4. 가

5. 가

() 가

, 가 ,

.

()

.

()

.

1.

.

2.

.

3. 가

.

7 () () ,

,

.

1. ,
2. ,
- 3.
4. , ,
- ()
1. .
2. .
3. , , 가
- () ,
1. 가 ,
2. .
3. 가 .
4. 가 ,
- () ,
1. .
2. 가
3. .
- () 가
1. .
2. 가 .
3. , 가 .
- 8 () (" ") 13 , 9
3 3 .

.

1.

2.

가

3.

가

4.

.

1.

2.

가

3.

,

.

9 ()

(" ")

6

.

1.

2.

3.

4.

()

5.

, ,

1

15

.

1

3

.

1

3

가

.

10

,

3

.

.

10 ()

4

.

1

, () 가

.

1

[1

] 가

.

2

가

13

.

,

3

2

.

13

14

14

11

.

11 (

)

(

"

"

)

.

15

.

1.

5

가

2.

.

3.

10

(

,

)

4. 가

5.

1

3

.

,

.

가

가

가

,

가

1.

2.

3.

.

12 (가)

KS

가

.

가

가

.

가

가

11

2

5

7

가

2

가

.

- 13 (가) 10 6 가
- 5 7
- 가
- 가 가가
- 가 3
- , 가 가
- 14 (가)
- ,
- 2 [2]
- 15 () 13 가 가 가
- ,
- 1
- 6
- < >
- 16 () 2 『
- 』
- 1
- 17 () 16 가
- 3
- 1
- 1.
- 2.
- 1
- 18 () 가 가

1

,

.

1. , , ,

2. •

3. ,
 , , ,
 .

19 < >

20 < >

21 () 가

.

22 () , ,
 가 .

23 ()

.

24 () 「 • 」 (248)

,

2016 3 23 .

< 2008 - 155 ,2008.11.6>

1 () .

2 ()

2000 - 81 .

3 ()

ISO/IEC 25051, ISO/IEC 9126 .

4 (SW) 15

SW ,

16 .

< 2009 - 136 ,2009.7.7 >

1 () .

< 2012 - 206 ,2012.8.21 >

1 () .

< 2013 - 142 ,2013.9.6 >

.

[별표 1]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중분류	소분류	설 명
시스템 SW	운영체제SW	Window계열, 공개 SW 등 OS관련 SW
	통신SW	네트워크, 유·무선 통신망관리, 통신프로토콜 지원, 통신응용 SW 등
	유틸리티 SW	Web서비스 용 등 컴퓨터의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보조하여 시스템을 유지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SW
	시스템관리 SW	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전산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SW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FW), 안티바이러스·스팸SW, 시스템 및 App 보안 SW, 암호·인증SW 등
	미들웨어 SW	사용자의 특정 요구로 만들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해 이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
	바이오메트릭스 SW	지문인식, 음성인식, 홍채인식 등 바이오메트릭스 관련 SW
개발용 SW	기타 SW	기타 시스템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도구	프로그램 개발툴, 소스코드 검사 툴, 컴포넌트 도구, WAS 등
	프로젝트 관리용 SW	테스트 관리 SW, 프로젝트 관리 SW 등
	데이터 관리용 SW	DBMS, DB리포팅 SW 등 DB관리용 SW
응용 SW	기타 SW	기타 개발용 SW
	일반사무용 SW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등 비즈니스에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관리 SW	ERP, CRM, SCM, 협업 App. 등
	과학용(교육용) SW	과학 및 교육전반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용 SW	산업전반에 활용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게임 SW	멀티미디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GIS SW	상하수도시설물 관리, 도로시설물관리 등 지리정보 SW
디지털콘텐츠 SW	기타응용SW	기타 응용 SW
	디지털 콘텐츠 SW	디지털 콘텐츠 SW
	콘텐츠 개발 SW	정보용 디지털 콘텐츠, 오락, 게임용 디지털콘텐츠 등
임베디드 SW	기타 SW	기타 디지털 콘텐츠 SW
	임베디드 OS	임베디드 OS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 GUI 도구 등을 포함
	임베디드 미들웨어 SW	CODEC, Network Protocol Stack, 임베디드 Virtual Machine 등
임베디드 SW	임베디드 응용 SW	PIMS, 기기내장 어플리케이션, 기타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등

【별지 제1호 서식】

종합평가보고서

1. 신청 업체 현황(※ 심의위원회 상정시 생략 가능)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제 품 명				
주 소	본 사			
	사업장			
자 본 금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수				
사업분야				

2. 신청 제품 개요

가. 제품의 용도 및 기능

나. 기술성

- S/W개발환경
 - 개발인력 :
 - 개발장비 :
 - 개발언어 :
- 국산화율 :
- 특허 및 인증여부 :

3. 평가경위

- 신청일자 :
- 현장심사 :

- 제품시험평가 :
- 심의위원회 :

4. 현장심사 및 제품시험평가 결과

가. 현장심사 결과

나. 제품시험평가 결과

5. 종합의견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심사 보고서

신청업체명 :

신청제품명 :

200 . . .

심사자 : (서명)

(서명)

(서명)

1. 일반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전 화	
종업원 수		주 생산 제품	
신청품목명		신청품목 개발기간	
[용도 및 주요기능]			
[실사결과요약]			

2. 개발환경

<예시>

- 개발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
- 요구사항 분석 기술
- 개발관리 매뉴얼 등 활용 여부
- 개발관리 체계
- 형상관리 체계
- 신청제품 업그레이드

3. 시험환경

<예시>

- 시험장비 보유현황(H/W, SW 등)
- 시험인력 보유현황
- 유지보수 지원체계 구축 및 전담인력 보유
- 교육지원체계 운영 현황

4. SW품질 관리환경

가. 개발방법론 적용여부

나. 품질관리공정 운영여부

다. 신뢰성 데이터 관리여부(고장밀도, 결함밀도, MTBF등)

[2013.9.6] [2013 - 149 , 2013.9.6,]

1 () 「 」 23 1 , 16 3
 2 9 3
 (") , .

2 ()
 , 가 79 - 2 .

3 () 2009 1 15 .

< 2009 - 6 , 2009.1.15 >
 2009 1 15

< 2010 - 70 , 2010.4.1 >
 .

< 2013 - 149 , 2013.9.6 >
 .

[2013.9.6] [2013 - 150 , 2013.9.6,]

1

1 () 「 (" ") 23 ,
(" ") 16 3 16 5 (" ")
) 9 11

2 ()

1. " " 2 6 .

2. " " 23 3

가

3. " "

4. " "

5. " "

6. " "

2

3 () 23 3 16 4

1 .

4 ()

3

1. 2 (2 , 3) .

2. 가 1 1 3 2 ,
1 5 3 .
(2 - , 3
-) .

5 () 16 5 3
, , , 2 .

3

6 ()
10 1 (" "
) .
,

7 ()
.
1

2

10 3 , 10 3
,
10

8 () 10 3
가

3

8 2() () , , 가 4 .

4 .

9 () 23 2 , 16 3 1 , 9

1. (" ") 9 1

, ,

2. 4

3 .

3. 3
9 2 3 .

10 (•) 9 •

1. •

• .

2. 5

3. •

4. 가 • .

11 (•) 10 2 •

1. 3 10

2. 2 .

3. . 가 , 2 .
가.

4. 가.

5. 3 2 3 가 .
12 () 16 3 1

1. 5
3 3

2. 5 5 10
5 5

1. 2
2. 2
3.
4.
5.
6.

< 2008 - 145 ,2008.10.16 >

()

()

“ 가 (ISO/IEC 15504) ” “
(CMMI/SEI/CMU) ”

가 2008 12 31

< 2013 - 16 ,2013.1.30 >

() .

< 2013 - 150 ,2013.9.6 >

.

[별표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영역 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1.1 프로젝트 계획	1.1.1 프로젝트의 목표 및 범위를 결정한다.
	1.1.2 프로젝트에 적용할 생명주기와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1.1.3 공수와 비용을 산정한다.
	1.1.4 일정과 예산을 결정한다.
	1.1.5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1.6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는다.
1.2 프로젝트 통제	1.2.1 프로젝트 계획 요소들을 점검한다.
	1.2.2 프로젝트의 진척사항을 검토한다.
	1.2.3 주요 단계별 산출물 검토를 수행한다.
	1.2.4 식별된 문제들을 분석한다.
	1.2.5 시정조치 활동을 수행한다.
1.3 협력업체 관리	1.3.1 획득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한다.
	1.3.2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1.3.3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1.3.4 협력업체의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1.3.5 제품 및 서비스를 검수한다.

영역 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2.1 고객 요구사항 관리	2.1.1 고객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2.1.2 고객 요구사항의 변경을 관리한다.
	2.1.3 고객 요구사항과 산출물간 추적성을 유지한다.
2.2 분석	2.2.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2.2.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2.2.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2.3 설계	2.3.1 구조 설계를 수행한다.
	2.3.2 상세 설계를 수행한다.
	2.3.3 테스트 계획을 수립한다.
2.4 구현	2.4.1 소프트웨어 단위를 구현한다.
	2.4.2 단위 테스트를 수행한다.
	2.4.3 소프트웨어를 통합한다.
2.5 테스트	2.5.1 통합 테스트를 수행한다.
	2.5.2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한다.
	2.5.3 인수를 지원한다.

영역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3.1 품질보증	3.1.1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한다.
	3.1.2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3.1.3 품질보증 활동 결과를 관리한다.
3.2 형상관리	3.2.1 형상 항목을 식별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3.2.2 형상 통제를 실시한다.
	3.2.3 형상관리 기록을 관리한다.
	3.2.4 형상 감사를 실시한다.
3.3 측정 및 분석	3.3.1 측정 및 분석 계획을 수립한다.
	3.3.2 측정을 실시한다.
	3.3.3 측정 결과를 분석한다.
	3.3.4 측정 분석 결과를 관리한다.

영역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4.1 조직 프로세스 관리	4.1.1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4.1.2 표준 생명주기 모델을 정의한다.
	4.1.3 조직 프로세스 조정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4.1.4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를 확산한다.
	4.1.5 조직 프로세스 적용 상황을 확인한다.
	4.1.6 프로세스 관련 경험을 자산으로 축적한다.
4.2 기반구조 관리	4.2.1 조직 기반구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4.2.2 조직 기반구조를 구축한다.
	4.2.3 조직 기반구조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4.3 구성원 교육	4.3.1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4.3.2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4.3.3 교육 및 훈련의 효과를 평가한다.

영역 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5.1 정량적 프로세스 관리	5.1.1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 성과 목표를 정의한다.
	5.1.2 조직 프로세스 성과 베이스라인을 정의한다.
	5.1.3 조직 프로세스 성과 모델을 정의한다.
	5.1.4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성과 목표를 정의한다.
	5.1.5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5.1.6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성과를 확인한다.
5.2 문제해결	5.2.1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5.2.2 해결할 문제를 선정한다.
	5.2.3 선정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정의한다.
	5.2.4 해결방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5.2.5 문제 해결방안의 성과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5.3 프로세스 개선관리	5.3.1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 및 목표를 식별한다.
	5.3.2 조직 프로세스의 강점 및 약점을 평가한다.
	5.3.3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5.3.4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5.3.5 프로세스 개선 활동의 성과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별표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는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로 구성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 신청관리비 + 인증심사비 + 직접경비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의 구성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별	적 용 범 위	산 정 기 준												
▪ 신청관리비	○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모든 인증신청인에게 일괄 적용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행정업무 :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증신청 접수, 인증 상담, 심사 계약, 심사팀 구성, 심사계획서 작성 및 발송, 인증심의회 소집,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등	-												
▪ 인증심사비	○ 인증심사원의 참여인원수, 일일노임단가, 심사 일수 등에 따라 산정 <등급별 심사 최소 참여인력(예)>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th>2등급</th><th>3등급</th></tr> </thead> <tbody> <tr> <td>선임심사원(명)</td><td>1</td><td>1</td></tr> <tr> <td>심 사 원(명)</td><td>2</td><td>3</td></tr> <tr> <td>계</td><td>3</td><td>4</td></tr> </tbody> </table>	구 분	2등급	3등급	선임심사원(명)	1	1	심 사 원(명)	2	3	계	3	4	심사 참여인력 × 심사기간 × 심사원 일일노임단가
구 분	2등급	3등급												
선임심사원(명)	1	1												
심 사 원(명)	2	3												
계	3	4												
▪ 직 접 경 비	○ 인증신청인의 특성(심사현장의 위치 등)과 인증심사팀 특성(원거리 거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심사보고서 인쇄비 등 심사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인증기관은 실비정산방식을 적용												

[별표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 기준표				
항 목	세 부 항 목		적합	부적합
1. 지정 신청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2.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	경영관리, 재정 관리, 조직 관리, 인증업무 추진계획			
3.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	가. 조직	· 인증조직 체계(행정, 인증심사, 성과관리)의 설치		
		· 인증심의조직(인증심의회) 설치		
	나. 인력	· 인증심사원 5명 이상 확보		
		· 인증심사원의 전문능력 보유		
	다. 운영절차	· 인증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 인증수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인증표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 및 불만,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인증자료의 분석 및 관리·보고에 관한 사항		
		· 인증고객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인증심사원 평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인증심사·심의 및 컨설팅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고객만족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소속 : 직위 : 성명 : 년 월 일 (서명)				

※ 인증기관 지정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지정심사기준의 모든 세부항목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임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인증 신청 기업 현황	법 인 명	(한글)	대 표 자		(한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 소	□□□-□□□□				
인증 심사 정보	심사대상조직명					
	심사대상사업명					
	인증 신청 등급					
	참여인증심사원					
	인증심사기간	사전 심사		현장 심사	~	
인증심사등급						
인증심사항목		인증심사내용			결과	인증심사원
인증심사 결과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불일치 사항						
인증심사원		제시 의견				
상기와 같이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인) 인증심사원	(인) 인증심사원	(인) 인증심사원	(인) 인증심사원	(인) 인증심사원	(인)
불 입 서 류		별표1의 세부평가항목별 인증심사결과 및 등급결정표				

210mm×297mm(신 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의결과보고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의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인증 신청 기업 현황	법 인 명	(한글)	대 표 자		(한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 소	□□□-□□□				
인증 심사 정보	심사대상조직명					
	심사대상사업명					
	인증신청등급					
	참여인증심사원					
	인증심사기간	사전 심사		현장 심사	~	
	인증심사등급					
인증 심의 정보	인증심의위원					
	인증심의의일					
인증심의 결과						
인증심의등급						
인증심의위원장						
인증심의위원 의견						
상기와 같이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의위원장 (인)						
인증심의위원		(인) 인증심의위원	(인) 인증심의위원	(인) 인증심의위원	(인) 인증심의위원	(인)
붙임서류		인증심의회 회의록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이의 신청 기업 현황	법 인 명	(한글)	대 표 자		(한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 소	□□□-□□□□				
	답 당 자	부서명/직위		Tel / Fax		
성 명			E-mail			
인증 심사 정보	심사대상조직명					
	심사대상사업명					
	인 증 신 청 일		년 월 일			
	인 증 기 관 명					
	사 전 심 사 일		년 월 일			
	현장 심사	문서심사	년 월 일 ~		년 월 일	
		면접심사	년 월 일 ~		년 월 일	
인 증 심 의 일		년 월 일				
인 증 결 과						
이의 신청 사유	신청요지					
	신청내용					
상기와 같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제 출 서 류		이의 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 <신설 2013.1.30>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변경 신청 기업 현황	법 인 명	(한글)		대 표 자	(한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 소	□□□-□□□				
	담 당 자	부서명/직위		Tel / Fax		
성 명			E-mail			
인증 정보	대상 조직명					
	인 증 번 호					
	인 증 등 급					
	인 증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 신청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상기와 같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붙임자료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014.2.5] [2014 - 5 , 2014.2.5,]

1

1 () 「 」 (" ") 13 20 (" ") 12 17
(" ") 9 14

2 ()

1.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

(" ")

2. " " (" ")

3. " " 15

4. " " 14 1 (" ")

16

5. " " 18

6. " " 14

7. " 가 " 가 가

8. " " 25 2

2

3 () 13 5 "

1. , , .
(NET) ,

2. 9 () .
()

3. 32

4. 18 2 ()

5. 9 .

6. 3 24 , 30

7. . 8 5
(2010 - 33)
(,)

8. 8
() (,)
)

4 ()

,
3

5 () 9 2

, ,
.

1
 9 2 가
 9 3
 1
 1 2
 3
 6 (10 ("
 ") 가 10
 1 , (, , 가
 , , 가 , (), 가
 15 11
 11 (" "
) 가 ()
 () ,
 7 2
 1. 가 3
 2. 5 ,
 3
 3. 가 3
 11
 10 ,

7 ()

15 3

8 11 , , ,
11 2

15 6 .
1

1. 3 가

2. ,
가

8 ()

6

4 ,

가 17 (" ")

8 .
9 가

1. (NEP)

2. , ,

(NET)

3. 13 (GS)

가 .
6 1 1

1 .
가

가 , , ,
가 , ,

9 ()

11 1 ,

7 .

23

가

10 ()

()

11 2 1

가

2

가

가

가 65

가

2

가

가

2

,

가

.

11 ()

1

1.

,

2.

,

3.

가

,

3

.

가

• 가

,

.

12 ()

7

23

15

3

11

4

13 ()

30

.

,

8

11

.

7 2
가

30 ,

4

14 () 15 6 , ,
1

가 12 2 3 ,

2

15 () 11 2 3

1. 11 3 , 3 가

2.

8 11

1 1 가

16 () 15 14

1.

2.

50%

3.

4. 가

2 , 1 2

50%

5. 10 1 가

1 1 ,

1 1

3

17 () 8 1 4
23 1 .

(" ") 7 , .

• , • , • , • , • .

1 .

1. () 3

2. •

3. , 가

4. 1 3

8 .

.

18 () .

, 17 5

.

가

가 70

3 2 가 .

19 () 17

• ,

.

5 .

20 () , ,

3 .

1. 10

2.

3. ,

4.

21 () 가 17 4

17 4 2 3

가

22 () 가

10

7

5

90

30 , 8 1

16

1

1.

2.

3.

가

2

23 () 7

8 1 1 3

1

1

3

24 () 8

11

가
가

1.

2.

3.

4.

25 ()

17 1

가

3

1. 17 1 1

2.

가

26 ()

15 1

27 ()

("EPC ")

15

11 5

1

EPC

16

15 3

EPC

2

3

35

2

6

28 ()

29 (가)

가

가

30 ()

1

가 15 2 1 가 2 2
가

가

31 () 1

1

32 ()

가 4 가 ()

가

가

1 가 ()

33 () 가

, 가

34 ()

1

「

」 51

1

가

7

가

35 (

가

•

)

16

1

17

1

가

(

"

"

)

6

가

14

14

1.

,

1

,

1

,

1

,

1

,

1

11

1

.

2. 가

가

1

,

1

가

가

1

가

1

,

1

11

1

.

3

10

. ,

36 (

)

가

,

1

11

1.

•

2.

3.

10

1

가 1 .

37 () 2 6 2 7 2

1 .

1 50 .

15 .

8

38 () 8 , 23

.

1 10 .

39 () 「 . 」 (248)

,

2017 2 4 .

< 2008 - 26 ,2008.7.2>

.

5 2 1

2008 7 30

2

.

< 2009 - 52 ,2009.11.22>

.

2009 - 105

가

.

< 2010 - 29 ,2010.9.2>

1 () .

2 () 2010 1 1

9 ()

3 2 .
 3 () 23 2
 .
 4 () ?
 .

< 2013 - 24 ,2013.6.28 >
 1 () .
 2 ()
 9 . ,
 (NET), .

< 2014 - 5 ,2014.2.5 >
 1 () .
 2 ()
 9 .
 , 3 24 , 30
 , . 8 5
 (2010 - 33)
 , , (,
),
 8
 () (,
)
 .

[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S)
8.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10.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전력신기술지정제품
11.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

은 제품

1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14.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18.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제품
1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0. 산업융합촉진법 제3조 및 24조, 동법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 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2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택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택품'으로 지정된 제품
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별표2]

공장심사평가표

1. 공장심사평가기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경영 상태 (15)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불임 참조	2	4	6	8	10	
		CCC+ 이하 또는 없음	B+ ~ B-	BB+ ~ BB-	BBB+ ~ BBB-	AAA ~ A-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 국내외 시장동향인식 등	1	2	3	4	5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기술 개발 여건 (4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2	5	7	10		
		일반부서와 병행	자체전담부서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1	3	5	7	1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R&D 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1	2	3	4	5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신기술 인증 보유	NEP, NET, GS, 전력신기술 등	3	7	10		
생산 및 사후 관리 (45)	○ ISO9000, 단체표준인증제품, GR, R, ES, 환경표지인증, 싱글PPM, KS등 공인인증 보유	2	3	4	5		
		1개	2개	3개	4개이상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5	10	15			
		30%미만	70%미만	70%이상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3	5	7	10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 제품생산 방법	5	10				
		외주제작	직접생산				
	○ A/S 전담인력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1	2	3	5		
		5%미만	5%이상	7%이상	10%이상		
가점 (4)	○ 벤처기업, Immo-Biz기업, 우수 Green-Biz기업	1	2				
		1개	2개이상				
	○ 국가R&D사업 성공업체(5년이내)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1	2				
		1개	2개이상				

* R&D 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로 확인(업력 1년미만의 기업은 세무사를 통한 자체 자료로 대체하나 3점을 넘을 수 없다)

* 인력관련 평가지표는 상시종업원수는 의료보험서류 등으로 확인하고 기술인력 등은 해당 기업의 인사명령 증빙서류로 확인

* 제품의 직접 생산 확인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적용

* 기술개발전담조직 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기타는 회사 조직도

* 기술개발 인력보유, R&D 비율,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A/S전담인력의 해당 평가지표 비율

이 0%인 경우에는 평점을 0점으로 한다.

2. 종합의견

--	--

3. 면담자 및 심사자

면담자 (업체)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성 명	(인)	성 명	(인)
심사자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성 명	(인)	성 명	(인)

< 붙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장심사 신청일인 경우도 인정)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공장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별표 3]

공장심사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금 액
인증심사원 인건비	◦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을 적용한다 ◦ 수당산정의 기간은 2일(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로 하고, 수당산정의 인원은 2인으로 한다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2일(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산정한다

[별표 4]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접수번호 :

제 품 명		
적 용 기 술 명		
기술성 (일반화된 기술기준 이상) (20)	기 술 성	(20) 일반화된 기술기준보다 상당히 상향된 제품(세계적) (15) 일반화된 기술기준보다 많이 상향된 제품(국내적) (10) 일반화된 기술기준보다 조금 상향된 제품(동종업계내) (0) 일반화된 기술기준보다 기술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
	적 용 성 (20)	(20) 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개선 (15) 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다소 개선 (10) 제품의 부가적인 성능을 개선 (0) 제품의 성능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발 전 성 (20)	(20)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제품 (15)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제품 (10) 현재의 수준에서 제한적인 발전이 가능한 제품 (0) 대체품 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제품
	파 급 성 (20)	(20) 핵심제품으로 산업전반에 파급이 큰 제품 (15) 전문제품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제품 (10) 단순개량제품으로 적용분야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제품 (0)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
경제성 평가 (20)	기존제품대비 성능비교(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약간미흡(4) 미흡(2)
	생산/가격 경쟁력(5)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약간미흡(2) 미흡(1)
	시장규모(5)	(5) 수출 및 신규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상당히 있음 (3) 국내에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음 (1)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총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명 칭				
	② 대 표 자		③ 전화번호		
	④ 주 소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않는경우 신청인이직접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법인 또는 단체 정관 2. 성능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 계획서 3.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없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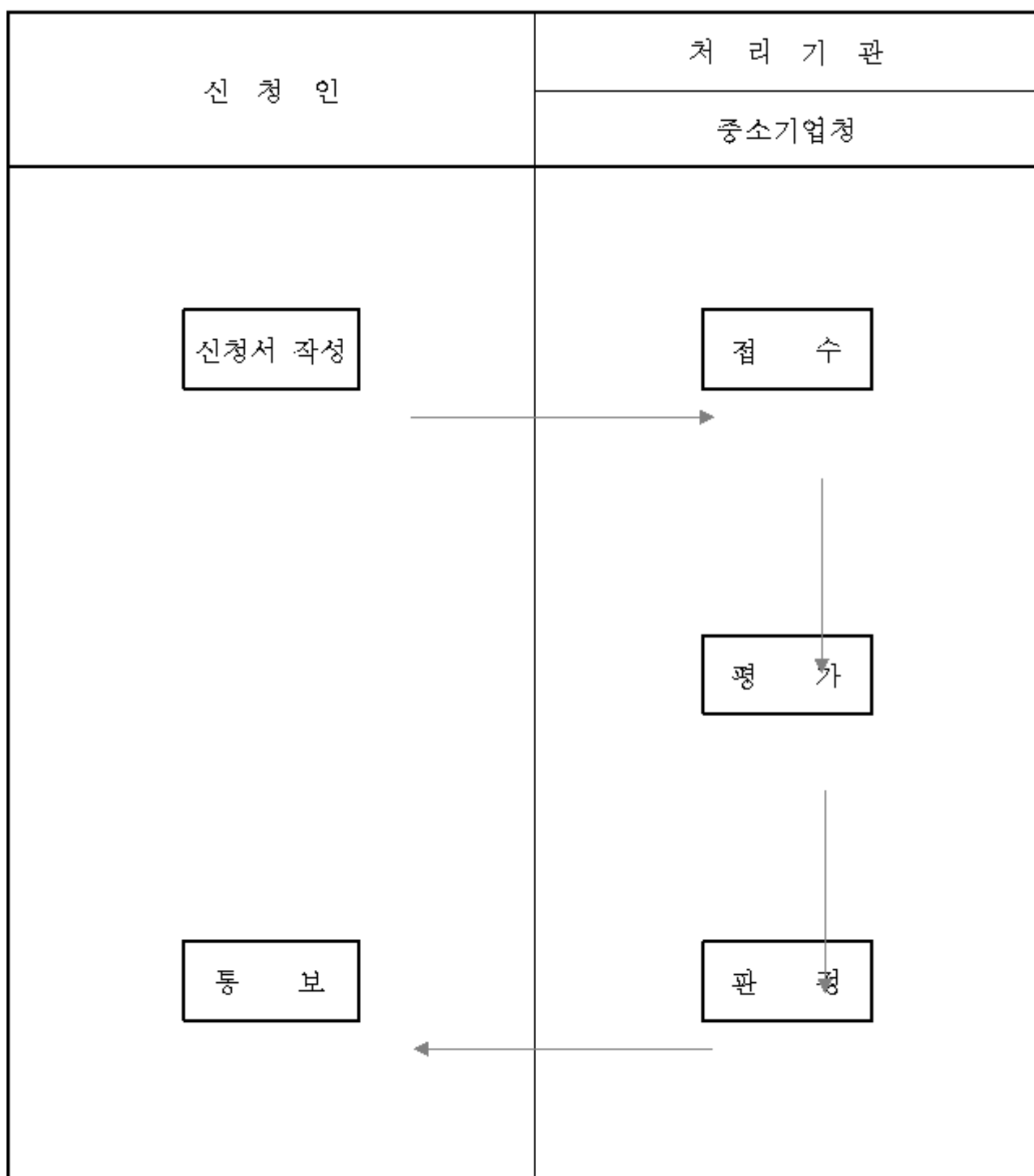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210mm×297mm(신문 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시험연구원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소 재 지 :
4. 시험분야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20g/㎡)

[별지 제3호서식]

종합평가보고서

20 . . .

평가자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 지방중소기업청
(○ ○ 시험연구원)

1. 신청제품명(영문)

2.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주생산품	
총 매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총 수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매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수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주거래처			신청제품 주수요처		
동종업체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등)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3. 평가 경위

- 신청일자
- 공장심사(심사자, 심사일자)
- 성능검사(검사자, 검사일자)
- 기타 참고사항

4. 제품내용

가. 제품개요

- 구조
- 작동원리

나. 제품의 시장성

-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년 도	매 출 액	국내시장점유율(%) (금액:천원)	세계시장 점유율(%) (금액:\$)
과년도			
금년도			
차기년도 (예상)			

- 제품의 시장성

다. 동종업계와의 제품기술수준

신청제품	국 내	국 외

라.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등록번호(일자)	제 목	등록완료여부
특 허			
실용신안			

마.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5. 평가결과

- 성능검사(요약)
- 공장심사(요약)

6. 종합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

발급번호 :

신청인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능보험 가입(예정) 내용

계 약 명 (제 품 명)	
보험가입금액	
보 험 기 간	납품일로부터 년
③ 제 출 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2조에
의거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주) 대표이사 (인)

< 유 의 사 항 >

- ① 이 확인서는 성능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예정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성능보험의 효력은 “성능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만 발생합니다.
- ②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도 신청인이 계약체결시까지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③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신청인에 대하여 성능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 납품계약 체결시까지 신청인이 성능보험가입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 등 성능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 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는 등 신청인의 신용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 다.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라. 기타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신청자가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별지 제5호서식]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EPC품명				
총매출 (억원)	연 도					총수출 (백만 \$)	연 도		
EPC제품 매출(억원)	연 도					EPC제품 수출 (백만 \$)	연 도		
기타인증현황 (NEP, NET 등)					EPC제품 주거래처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2. 판매실적

판매연도	판매기관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 판매기관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은행계좌 (회사명의)	(은행)							
	담당자		전화		핸드폰		이메일		
성능 인증비	계약번호				성능인증검사비(원)				
	제 품 명				신청금액(원)				
	유효기간								
원가 계산	인증번호				원가계산비(원)				
	인 증 명				신청금액(원)				
	유효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에 의하여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 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성 능 인 증 비	1. 성능인증서사본 1부 2. 성능검사비 영수증사본 1부 3.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부 4.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부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필요시)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조회	없음	
	원 가 계 산 비	1.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부 2. 원가계산비영수증사본 1 부 3.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부 4. 원가계산결과보고서 1부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필요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30일(절차생략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인증 신제품명 (용도 및 규격, 모델명)		
납품예상기관				
공장 현황	종업원수	임원: 명,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타: 명, 계: 명		
	자본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연간 백만원	설비자동화율	%
성능 담당	직 위		성 명	
	자 격 구 분		자격번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않는경우 신청인이직접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비용
	1. 성능검사 대상제품의 규격 설명서 1부(공공기관이 구매가능한 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시) 2.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 1부		없음	공장심사 비용 : 성능검사 비용 : 계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 의견서

접수번호 :

신청제품	제 품 명		제품명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심의결과	성능인증 참여여부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한 경우 심의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u>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심의위원단 의견서 첨부(첨부)</u>		
	추가확인 내 용			
평가 내용				
☞ 기술성 및 적용성, 기존제품 대비 성능이 우수한 부분, 제품개발로 인한 절감 효과(기술적, 생산적) 등 포괄적 의견 작성				
기 타				
☞ <u>추가확인(규격등) 사항에 대한 세부사유</u> 및 <u>기타 심사위원회의 권유 사항</u> 등				

년 월 일
 분과 위원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적합성 심사위원회 부적합 의견서

접수번호		제품명	
신청업체명		대표자	
접수일자		평가일자	
심의결과	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 부적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기술적 결함, 안전성결함, 기존제품과 비교 결과 등 해당업체가 수긍 가능한 구체적 의견 제시)			
제재내용			

년 월 일

심 의 위 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10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일익을 다하도록 한다.

2. 동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써 과제를 심사하는 동안 품위를 유지하면서 공명正大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3.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의 비밀과 보안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세칙 제38조(비밀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타인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확대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20 년 월 일

회사(법인)명 : _____ (인)

동의자(대표자)명 : _____ (인)

주민등록번호(대표자) : _____

법인등록번호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주 소 : _____

[2014.1.1] [2013 - 196 , 2013.12.31,]

1 () 「 」 (" ") 5 , 7
(" ") 3 , 5 6
,

2 ()
5 (" ")
,

「
」 18 .

3 () 3 2 3 " " 1
가 .

1. 17
2. 26
3. 27
4. 「 가 」 14
5. 「 」 52
6. < >
7. 「 」 2
- 8.

3 2 4 " " 가
.

- 1.
- 2.
- 3.
- 4.

4 ()

.

(「 」 1

)

100 10

.

5 () 2 1

.

1.

2. (

)

3.

4.

5. ()

3 1

, (" ")가

.

1

.

6 () 가

2

.

1. . .

2.

1

, 가

1

.

7 () 1

.

1. . , 20

6

2.

3. 6

4.

8 ()

.

9 () 「 」 8 「 .
 (248)」 2014 1 1
 3 (3 1 1)

.

< 2000 - 83 ,2000.11.17>

.

< 2009 - 166 ,2009.8.21>

1 () 2009 8 19 .
 2 () .

< 2012 - 179 ,2012.7.31>

1 () 2012 8 1 .
 2 () .

< 2013 - 140 ,2013.9.6>

.

< 2013 - 196 ,2013.12.31>

1 () 2014 1 1 .

■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1. 조성사업자 상호명(기관명) :
2. 대 표 자 :
3. 시 설 소 재 지 :
4. 형 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변경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변경 내용 (해당 사항만 기재)	진흥시설주소				
	진흥 시설 규모	전체면적	m ²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m ²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m ²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m ²
	입주 사업자 수	총사업자수	개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	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수	개	지원시설 수	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2013.6.28] [2013 - 27 , 2013.6.28,]

1

1 () 「 」 18 15

.

2 ()

1. " ("u - ")" (" "

) 18 1

.

• • • •

.

2. " (" " ")" u -
(" ") 15 1

.

가. u -

. u -

. u -

. u - •

3. " " u -

.

4. " " u - 가

.

5. " " 2 2 (

.) , .

6. " " 2 3

.

7. " " (" "

)

.

8. " " (

" ") .

9. " " (BPR), (ISP),

3 ()

, 1 .

4 () u - (BPR)

(ISP), , ,

2 2 ,

.

2

5 ()

1. 3

2. 15 2

3. 15 5

4. 13 .

5.

6.

7.

.

6 ()

1. ,

2. 9 .

3. .

4.

5.

6. ,

7. 가

8. .

9.

10.

11.

•

7 ()

.

1.

2.

3.

4.

5.

•

6.

•

7.

8.

.

1.

2.

•

3.

4.

2

.

1

2

.

8 ()

.

1.

2.

3.

4.

5.

가

가

9 ()

(" ") 10 .

,

.

,

가

.

1.

2.

3.

,

.

1. 10

2. 11

3. 13

4. 22 3 5

5.

.

3

10 ()

(1) .

1

.

1.

2.

3.

4.

5.

6.

2

가

.

가

.

11 ()

u -

가

(2) .

1

.

1. 가

2.

3.

4.

2

가

.

가

.

12 (.)

10

11

.

1

•

•

13 ()

12

•

•

2

•

•

3

,

•

14 ()

•

•

15 ()

12

•

1.

2.

3.

가

4.

1

가

•

4

16 () 13

•

,

,

,

,

•

•

•

•

.

17 () " 가
(" 가 ")"

.

.

12

13

. , 가 26

.

,

.

1

,

10

,

.

18 () 가 , , ,
(" ")

, 5 2

.

1

.

19 () 가

.

1. 가

2.

3. 가

4. 가

1

.

1

,

.

20 () 가 44

,

.

5

21 ()

.

.

22 ()

.

1. (, , ,)

2. . ,

()

가

.

3.

가

,

.

,

,

,

.

3

.

100

10

3

가가

.

23 ()

45

"

.

"

56

59

.

24 ()

,

,

57

.

25 ()

가

14

.

14

가

가

26 (

)

1

2

27 (

)

(가

,

,

)

1

가

,

가

2

1

2

3

1

가

,

가

,

가

가

가

3

1

(

,

,

.)

28 ()

, 가 . ,
, BPR/ISP

.

1

.

.

.

2

, ,

2

.

.

29 ()

.

,

.

6

30 ()

,

.

31 ()

,

「

.

」

.

1

,

100 70

1. 5 (

.

)

2. 가

76

가

가

가

,

,

20

.

■

-

-

-

•

•

•

-

■

-

-

3. , 가

4. .
 , , , ,
 , .

7

35 () .
 , .
 ,
 .
 ,
 .

36 () 13 ,
 ,
 .

37 () 2 , 36
 ,
 .

38 () 37 . 가
 ,
 .
 37 .
 ,

가 2

37 . 가 11
 , .

39 ()

.

1. 15 1 1 , 3 , 4

2. 37 . , 가

3. ,

가

8

40 () " " " 가 " ,

" " " . " , .

41 ()

.

42 () " . (248)"

,

2015 11 30 .

< 2012 - 56 ,2012.12.18>

1 () 2013 1 1 .

< 2013 - 27 ,2013.6.28>

1 () 2013 6 28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제안서 [신규시범사업]					
제안과제명					
제안기관명	○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제안담당자	홍길동	부서명			
		전화(휴대폰)	()		
		e-mail			
제안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관, 기존 서비스 현황·이용 통계 등 ○ 사업추진 근거법령, 정책, 자체 계획 등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기존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국내외 선진 사례 등				
과제내용	○ IT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 서비스 내용 및 개념도 ○ 추진체계 및 사전협의 여부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행정안전부 지원금 + 주관기관 부담금)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기대효과	○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유비쿼터스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비쿼터스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 행정기관 등의 장 (인)					

220 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제안서 [확산검증사업]

제안과제명					
제안기관명	○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제안담당자	홍길동	부서명	직위		
		전화(휴대폰)	()		
		e-mail			
제안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관, 기존 서비스 현황·이용 통계 등 ○ 사업추진 근거법령, 정책, 자체 계획 등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기존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국내외 선진 사례 등				
기존 추진내용	○ 구축성과 및 활성화 노력 등 ○ 지원사업 종료후 운영예산 확보 현황				
과제내용	○ IT 신기술을 활용하여 보완, 개선하는 사업 내용(기 구축내용과 비교) ○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추진체계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행정안전부 지원금 + 주관기관 부담금)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기대효과	○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유비쿼터스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비쿼터스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 행정기관 등의 장 (인)					

※ 제안서 세부 내역은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별도 제출

[2014.3.18] [79 , 2014.3.18,]

1

1 () 「 」 64 , 78 2
.

.

2 () .

1. " "(" ")

가,

,

.

가.

.

.

가

2. " " 가 .

.

,

.

3. " " (" ")
) .

4. " " (" ") .

5. " " (BPR)/ (ISP),

.

6. " " ,

.

3 ()

.

4 () (BPR) (ISP),
 , , 2 1

2

5 ()

1.

2.

3. 11

4.

5.

6.

6 ()

1.

2.

3.

4.

5.

6. 가

7.

8.

9.

10.

7 ()

1.

2.

3.

4.

5. •

6.

7.

.

1.

2.

•

3.

4.

2

.

1

,

2

.

8 ()

.

1.

2.

3.

4.

가

가

9 ()

10

11

, ,

가

(

" ") • .

3

10 ()

가

, 가

.

1

2

1

,

.

2

「

」 (

" "

)

78

1

,

.

3

.

가

.

3

4

,

가

.

4

,

.()

11 ()

， ， ，

・

・

・

2

・

12 (・)

「

」

・

「

가

」

，

・

1

2

가

，

・

13 < >

14 ()

11

・

1.

2.

3.

가

4

15 () 11

・

「

」

，

・

・

・

16 ()

「 가

」 (" 가 ") 6

・

11

. , 가

26

29

.

가

.

.

17 ()

가 , ,

, 5 2

.

18 ()

.

.

19 ()

가

.

1. 가

2. 가

3. 가

4. 가

1 가 ,

.

1 , .

20 ()

「 가 」 44

.

20 2()

78 3

. ,

.

30

,

. , •

.

1 2

10

.

5

21 ()

,

.

21 2() 「」

64 2 「」 78 2

.

22 () 「」

59 「」 . 「」

56

.

23 ()

, , 「」

」 57

.

24 () ()

가

14

.

,

.

14

가

가

.

25 ()

,

.

.(

)

1

2

.

26 ()

가

,

. ,

가

,

,

,

.

1

가

,

,

,

2

3

가

가

가

가

27 ()

(" ")

1

28 ()

가,

6

29 ()

3

30 ()

11

31 () , ,
1 가
,

32 () , 30
가
.
.
.

33 < >

7

34 () 10 11
· · 29 33 가
.

35 ()
,

36 () 「 」, 「 가
」,

37 ()
.

38 () 「 · 」 (248)
,
2016 08 25 .

< 191 ,2008.8.14 >

1 ()

2 () 「 」 (18) (6.30)

< 246 ,2009.6.22 >

1 () 2009 6 22

2 () 「2009 」 (09.1.20)

3 () 6 , 11 33
2009 8 23 가 (‘ 09.8.23) 9
가 가

< 278 ,2009.9.30 >

1 ()

2 () 「2009 」 (09.1.20)

< 389 ,2011.12.30 >

1 ()

2 () 「2011 」 (2011. 1. 12)

< 1 ,2013.3.25 >

< 27 ,2013.8.26 >

1 ()

2 () 「2013 」 (2013.
1. 22), 「2013 」 (2013. 6. 20)

3 ()

.

1

.

< 79 ,2014.3.18 >

1 ()

2 () 「2014

」 (2014.

2. 26)

.

IT

[2013.9.2] [2013 - 137 , 2013.9.2,]

1 () 3 19 2 "

" "IT "

2 ()

1. 1 " " ,

2. "IT "

3. " " IT 1

3 () IT

3 (가) IT

4 () , , , , ,

「 」

5 () IT

,

5 , 3

1 ,

- 6 () IT 「
 ,
 」 (" ") .
 , , IT
 , 10
 3 ,
 . 1 1
 . , 가 .
 7 , 3
 . 가 3
- 7 (.) , , 가
 ,
 IT
 .
- 8 () 「 」 가
 , 10
 , .
- 9 (가 가) IT
 가 " 가 "(" 가 ") . ,
 가 10
 가 .
- 10 (가) IT 9 " 가
 가 " 가 , 가 「 가
 」 43 , 43 2
 ,
 1 , 가
 90 ,

가 , 가 가 가

11 () IT .

IT . 1 , 1

12 () IT . ,

1

13 () 「 . 」 (248)

2016 9 1 .

< 2010 - 226 ,2010.12.24>

1 () .

< 2013 - 137 ,2013.9.2>

1 () .

1

•

•

;

■

■

•

가 (,
)가 .

1. 13 (GS)
2. 16 (NEP)
3. 15 2 (NET)
2 가
가 가 .

7 (가)
1 ,

(" ") 57 , 71
2

가 .
2 6 2

1 가

8 () . " 가
" 26 , 27 가

" 가 " 46 , 67 , 68 , " 7
" , ,
가 .

1. .
- 2.
3. PC

4. 가 USB
5. 가

・ ・ ,
가 ・ ・ .

9 (가)

, ,

가

26

"SW 가 가 "

"DB 가

가 "

.

.

1. 가

2. 가 ,

가

3. 1 , 2 3 가

가

12

, 30 , 32

33

가 , 41

.

10 (가)

"

가

"

.

가

, , " "

11 () 20 2

"

"

.

12 () 가 가

.

1

"

"

.

13 () 71

58 1

.

1

57 5

"

"

.

13 2()

78 2 1

.

78 3

.

1

"

"

.

14 ()

82

83

"

", "

"

・

3

15 ()

16

20

3

"

"

4

・

16 ()

・

・

1. ,

2.

3. 가 , 가

4. ・ ・

5.

6. 가

가. 19

・

"

"

・ 7 1

・ 50 53

"

"

・ 20

・ 45

7.

17 ()

・ ,

가

가

・

1. ・ IP

2. ,

3.

4.

5.

6. . (IPS) , .

7. 「 」 9 1

8. 「 」 2 1

9. 「 」 4 , 7 3

10. 가 가

18 (가)

가 43 2, 44
 , 가 90 . ,
 가 80

.

1. 가 50%

2. 가 1

3.

19 () 가 가

, ,

.

1. 가 100%

2. 1 1 20%

가 3

1

.

.

가 (

, , 가) .

, 가

15

, .

가

.

20 ()

(PM) , 가 가

.

- 21 (가) 가 가 , 가
" 가 "
- 1 가
, 23 가 1 " "
- 가 가 . 가 1
" " 가 1 가 .
가 가 6
가 가 .
- 22 (가) 가 7 2,
8 가 가
가 .
- 23 (가) 가 , 가
8 9 , 9 10 .
- 24 ()
.
.
.
1. 가 ,
2.
3. 가 1
5 , " (www.g2b.go.kr)"
.
3 .
1.
2. ()
3.
4.
5. ()
6. ()
7.
8.
9.

25 ()

,

,

,

1.

2.

가 가

1

.

1.

,

,

10

,

가

.

가.

. 가

2.

.

3.

.

가

SW

.

26 ()

,

"

"

5 ,

"

"

.

27 ()

가

35 ,

35

.

가

35

5

1 ,

35

6

1

.

1.

,

2.

3

3.

4.

2 4

가

.

1. 10

20

2. 10

40

25

3. 40

30

가

20

2 ,

19

2

가

35

5 ,

35

6

10

・

28 ()

・

가

・

1

가 가

,

・

29 () 가

가

・

가 가

35

가

가

・

4

30 (가)

가가

가

・

가

,

・

・

가

가

2

・

・

가

2

가

가

가

・

,

가

・

가

・

2

가

・

가

・

가

・

・

31 ()

가

가

가

・

1

・

32 (가)

가

가

가

・

1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0

가

33 (

가

)

가

가

가

가

가

· ,

가

가

1. 10

90

2. 20

120

3. 40

150

4. 40

18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34 (

가

)

가

20

가

4

가

1. 가

2.

"

가

"

1

2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3

35 (

가

가)

32

33

가

가 가

가

가

36 (

가

)

,

,

,

,

,가

,

1. 가 43 "

" 8 15

2. 43 "

"

2

19 4 가

5

37 () ,

8 ,

7

1. 10 " .

"

2. 3 2 "

()" "

3. ()

4. " "

1 가

"

" 11 7

"

5 1

38 () 37 1 2

19 36 3

37 1 "

"

14

2

가

가

1

,

14

.

2

3

37

1

2

.

39 ()

10

5

. ,

3

.

1

,

.

1

,

,

7

.

가

,

,

.

40 ()

8

4

11

"

"

1

(/),

, (/ /)

.

38

「

」 25

.

,

가

76

1

,

76

1

가

.

41 ()

,

(

"

"

)

.

가

.

2

가

.

1. " 가 " 11 3 9 ()

2. "SW 가 가 " ()

1

4

가

42 () , , 가

・ , 가

가

,

"

"

54

(, , , ,)

, 가

43 () 7 1 7 4

1

44 () ,

1

1

가

45 () " "

16 , 가, ,

1

3

46 ()
20 2, " " 53

47 (가) 46 가
65 1 6 , 74 1 7 .

48 () 47
3 EA (www.geap.go.kr) .
54

1 .

49 ()
7 1 7 4 43 2 .

6

50 () 71 1
3 (, 71 1

1

1. :

2. :

2 .

51 () 가 , 3
가 .

50

가

‘ 가 ’ .
‘ 가 ’ .

52 () 3

53 () ,
가 3

1
" " 10 1

" 5 3 54

" 가・ " 가

가 3

71 1

54 () 4 1 4
2

1

가

7

55 () " " 18 ,
" "

56 () , , , " " .
" " 20 ,

1. 43 1 43 2

2. 50 1

57 ()

" " 21 , " "

58 () 51

"

(www.data.go.kr)"

59 ()

,

60 ()

" " 56

3

" " 57

61 ()

30 , 41 , 44

62 () 「 . 」 (248)

2016 8 26

< 2009 - 50 ,2009.8.25 >

< 2009 - 62 ,2009.10.21 >

1 ()

2 () 「 가 (

2006 - 36 , 2006.9.11) 」

< 2010 - 31 ,2010.5.6>

1 ()

2 () 「 (2008 - 22 , 2008.7.10) 」

< 2011 - 36 ,2011.9.5>

1 () 2

2 ()

< 2012 - 12 ,2012.3.6>

1 () 1

< 2012 - 25 ,2012.6.27>

1 () , 53 4 2014 1 1

2 () 50 53 6

1. 20 40 : 2013 12 31

2. 20 : 2014 12 31

< 2013 - 36 ,2013.8.27>

1 () , 53 4 2014 1 1

2 () 50 53

1. 20 40 : 2013 12 31

2. 20 : 2014 12 31

3 ()
(11690 , 2013.3.23)

4 () 「 · 」

「 · 」

·

< 별표1 >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 점수	비고
50% 이상	5.0	
45% 이상~ 50% 미만	4.0	
40% 이상~ 45% 미만	3.0	
35% 이상~ 40% 미만	2.0	
35% 미만	1.0	

※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평가점수는 조정할 수 있음

< 별표2 >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6명 이하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 별표 3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¹⁾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 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딩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딩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 별표 4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의 자격기준

1.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제출서류
기본요건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또는 보안취약점 진단·분석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업무내용 포함)
교육요건	· 기본요건을 만족하고 제2호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2. 진단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종류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시간
기본교육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기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기술 등 · 진단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진단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40시간
보수교육	· 지침·기준 등 제도 변경사항 · 최신 보안약점, 진단·제거기술 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진단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1년마다 8시간

< 별지 제1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안전행정부고시) ○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안전행정부고시)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안전행정부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안전행정부고시)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훈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 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사 유 및 대 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무선용 운영 체제 - android					
	- IOS					
	- 윈도우폰7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Objective C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 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					
프로그래밍	- PHP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웹프로그래밍					
데이터 교환	- XML 1.0, XSL 1.1					
	- RDF					
	- AJAX					
	o 교환프로토콜:					
데이터 교환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데이터 교환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 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침입탐지					
	- 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보안관리서버					
	- 웹방화벽					
	- DDos 대응					
	- VOIP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스팸메일 차단					
	- 바이러스 백신					
	- PC매체제어					
	- PC침입차단					
	- 콘텐츠보안					
	- 자료유출 방지					
	- 메일보안					
	- 서버보안					
	- DB접근 통제					
	- 다중영역구분					
	- 스마트카드					
	- 보안USB					
	- 복합기 완전 삭제					

< 별지 제2호 서식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 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 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 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2. 정보의 공동 활용

가. 공동 활용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법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 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 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다. 정보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 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 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공동 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암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 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 구축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 작성요령

-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
- 검토내용에는 ‘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사항을,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내용을 기재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 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원도급자) (하도급자) 직인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⑤ 지급비율 : $\Sigma \text{지급금액} \div \Sigma (\text{SW 월노임단가} \times \text{투입인력})$

< 별지 제4호 서식 >

000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 평가위원 : 000 위원

□ 평가점수

평가부문	입찰참가업체				비 고
	A	B	C		
XX부문					
YY부문					
:					
:					
:					
:					
합 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를 준용한다.

< 별지 제5호 서식 >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0000장 귀하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oooo장 귀하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장 귀하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	--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
3. 사업목적	-----
4. 사업범위	-----
5. 사업추진체계	-----
6. 사업추진절차	-----
7. 산출물계획	-----
8. 일정계획	-----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
10. 보고계획	-----
11. 표준화계획	-----
12. 품질보증계획	-----
13. 위험관리계획	-----
14. 보안대책	-----
15. 교육계획	-----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 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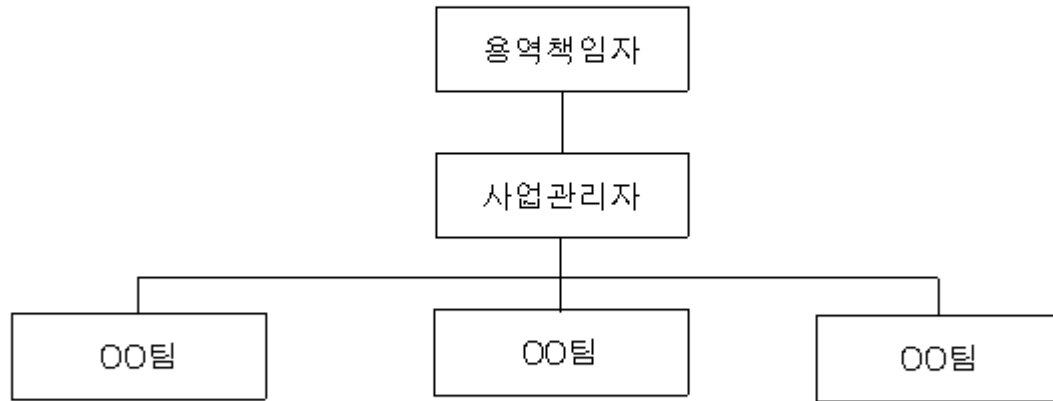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 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만 작성)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 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행업무	산출물	비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분	M				M+1				M+2												M+n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 종료일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 사업자가 투입인력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의 경우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 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자장소 (UDD)		
	단방 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47호)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18호)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TTA, 2009.12.22)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_____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00000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
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
: leesh90@gmail.com
: 2014.4.10



가